

알코아 코리아 (창원 압출 사업장) (주)
Alcoa Korea (Chang won Precision Extrusions)
일반 거래 약관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1. 수락

공급자는 이 약관이 본 계약은 물론 본 계약에 따라 판매자에 의하여 공급될 물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서면, 전산자료, 또는 기타 유형자료를 통한 각 구매주문서, 분할 주문서, 청구서, 작업지시서, 선적지시서, 시방서, 기타 서류(그러한 서류는 집합적으로 "본 계약"이라 칭함)에 반영되어 있고 그 일부임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한다. 공급자는 이 약관을 숙독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한다. 공급자가 본 계약을 서면으로 수락하거나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작업 또는 서비스를 개시하는 경우, 공급자가 본 계약과 이 약관을 일체의 수정 없이 전부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공급자가 제의하는 본 계약(이 약관을 포함)에 대한 추가, 변경, 수정 또는 개정 사항은 구매자 측의 권한 있는 직원이 그러한 제의를 수락할 것을 명시적으로 서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부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1. ACCEPTANCE

Seller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the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re incorporated in, and a part of, this contract and each purchase order, release, requisition, work order, shipping instruction, specification and other document, whether expressed in written form, by electronic data interchange or other tangible format, relating to the goods and/or services to be provided by Seller pursuant to this contract (such documents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is "Contract"). Seller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it has read and understands the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If Seller accepts this Contract in writing or commences any of the work or servic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tract, Seller will be deemed to have accepted this Contract and the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in their entirety without modification. Any additions to, changes in, modifications of, or revisions of this Contract (including the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hich Seller proposes will be deemed to be rejected by Buyer except to the extent that an authorized employee of Buyer expressly agrees to accept any such proposals in writing.

2. 선적 및 청구

2.1 **선적** : 공급자는 (가) 해당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구매자나 운송인이 지시하는 물품을 적절하게 포장, 표시 및 선적하고, (나) 구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선적루트를 정하고, (다) 본 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취급, 포장, 보관 또는 운송과 관련된 (관세, 세금, 수수료등을 포함하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라) 매 선적 시 구매자의 계약 및 분할주문번호와 선적일을 확인시켜주는 거래명세서를 제공하며, (마) 구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각 선적에 대한 선하증권이나 기타 선적영수증의 원본을 즉시 발송한다. 공급자는 구매자나 운송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선적물품에 대한 정확한 분류확인을 선하증권이나 기타 선적영수증에 포함시킨다. 각 포장상의 표시 및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및 송장상의 제품표시는 구매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SHIPPING AND BILLING

2.1 **Shipping**. Seller will (a) properly pack, mark and, ship goods as instructed by Buyer or any carriers and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laws or regulations, (b) route shipments as Buyer instructs, (c) not charge for costs relating to handling, packaging,

storage or transportation (including duties, taxes, fees, etc.)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in this Contract, (d) provide packing slips with each shipment that identify Buyer's contract and release number and the date of the shipment, and (e) promptly forward the original bill of lading or other shipping receipt with respect to each shipment as Buyer instructs. Seller will include on bills of lading or other shipping receipts the correct classification identification of the goods shipped as Buyer or the carrier requires. The marks on each package and identification of the goods on packing slips, bills of lading and invoices must enable Buyer to easily identify the goods.

2.2 **청구** : 공급자는 (가)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송장을 발행하고 교부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한 구매자의 자체 점수 기록/자체 발행송장에 의한 지급을 수락하고, (나) 전산이체를 통한 지급방식을 수락한다. 본 계약에 지급만기일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만기일은 구매자가 사용하는 플래티늄 시스템에서 정해지는 날로 한다. 이에 의하는 경우 지급만기일은 평균적으로 구매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날짜로부터 두 번째 달의 둘째 날이 만기일이 된다. 구매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물품이나 서비스에 어떠한 담보권, 법적인 제한 및 청구권도 없다는 증거자료를 수령할 때까지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2 **Billing**. Seller will (a) accept payment based upon Buyer's Evaluated Receipt **Record/Self-Billed Invoice** unless Buyer requests that Seller issue and deliver an invoice and (b) accept payment by electronic funds transfer. If the payment due date is not otherwise specified in this Contract, the payment due date will be the due date established by the Platinum System used by Buyer, which provides, on average, that payment will be due on the second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date Buyer receives the goods or services. Buyer may withhold payment for any goods or services until Buyer receives evidence, in such form and detail as Buyer requires, of the absence of any liens, encumbrances and claims on such goods or services.

2.3 **세금** :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 계약상 가격에는 물품세,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매출세 등을 제외하고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모든 국세 및 지방세가 포함된다. 공급자가 법에 따라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물품세,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매출세 등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별도로 구매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구매자가 물품세,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매출세를 환급받기 위해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나 서류를 필요로 할 경우 판매자는 이를 모두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된 대가에 대한 비용공제를 할 수 있도록 송장은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2.3 **Taxes**.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is Contract, the price includes all applicable federal, state, provincial, and local taxes other than sales, value added, or similar turnover taxes or charges. Seller will separately invoice Buyer for any sales, value added, or similar turnover taxes or charges that Seller is required by law to collect from Buyer. Seller will provide Buyer with whatever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that is required under local law in order to enable Buyer to recover any sales, value added, or similar turnover taxes or charges. Invoices shall also be in the appropriate form as required by local law to permit deduction of payments for income tax purposes by the Buyer.

2.4 **구매자로부터 세금의 원천징수** : 만일 구매자가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것이 법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다면, 구매자는 그 세금을 공제 또는 원천징수하여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할 것이다. 공급자가 요청할 경우, 구매자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세무기관에서 발행한 공식적

인 세금 영수증이나 기타 증거 자료를 공급자에게 제시할 것이다.

2.4 Withholding of Taxes by Buyer. If Buyer is required by law to make any deduction or withholding from any sum otherwise payable to Seller under this Contract, Buyer shall be entitled to deduct or withhold such amount and effect payment thereof to the applicable tax authority. Buyer will, upon request from Seller, provide Seller official tax receipts or other evidence issued by the applicable tax authorities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any taxes which are withheld have been paid.

2.5 인도계획 :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도는 구매자가 본 계약에서,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일련의 분할주문서나 지시서에서 명시한 수량 및 일자 그리고 시간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도일자는 구매자가 설정한 모든 인도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구매자는 구매자의 인도계획표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 받거나 구매자의 인도계획표에 명시된 인도일 이전에 인도된 모든 물품을 수령하도록 요구 받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인도계획에 명시된 인도일자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하여 생기는 모든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구매자의 고객이나 시장의 요건, 경제적 혹은 기타 조건으로 인해서 인도계획이 변경될 경우, 구매자는 계획된 선적물을 변경하거나 계획된 선적을 직접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공급자는 본 계약의 가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또한 기타 다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2.5 Delivery Schedules. Deliveries will be made in the quantities, on the dates, and at the times specified by Buyer in this Contract or any subsequent releases or instructions Buyer issues under this Contract. Time is of the essence with respect to all delivery schedules Buyer establishes. Buyer will not be required to pay for any goods that exceed the quantities specified in Buyer's delivery schedules or to accept goods that are delivered in advance of the delivery date specified in Buyer's delivery schedules. Seller bears the risk of loss of all goods delivered in advance of the delivery date specified in Buyer's delivery schedules. If the requirements of Buyer's customers or market, economic or other conditions require changes in delivery schedules, Buyer may change the rate of scheduled shipments or direct temporary suspension of scheduled shipments without entitling Seller to a price adjustment or other compensation.

2.6 할증 선적 : 공급자가 구매자에 의해 최초로 정해진 운송방법을 이용하여 구매자의 인도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물품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할증(보다 신속한) 운송방법을 이용하여 물품을 선적할 것을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공급자는 물품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적하여야 한다. 구매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급자가 구매자의 인도일정을 맞추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공급자는 그러한 할증선적에 따른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되, 구매자의 행위로 인해 인도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할증선적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2.6 Premium Shipments. If Seller fails to have goods ready for shipment in time to meet Buyer's delivery schedules using the method of transportation originally specified by Buyer and, as a result, Buyer requires Seller to ship the goods using a premium (more expeditious) method of transportation, Seller will ship the goods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Seller will pay, and be responsible for, the entire cost of such premium shipment, unless Buyer's actions caused Seller to fail to meet Buyer's delivery schedules, in which case Buyer will pay any costs for premium shipment.

2.7 거래량 예상 : 구매자는 미래에 필요한 물품의 기대되는 예상량, 견적 혹은 추정치를 판매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공급자는 이러한 예상량이 단지 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다른 예상 견적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심한 수많은 경제적 및 사업적 요인이나 변수 또는 가정에 근거해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구매자는 예상량의 정확성이나 완결여부를 포함해서 그러한 예상량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진술, 보증, 서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는다.

2.7 Volume Forecasts. Buyer may provide Seller with estimates, forecasts or projections of its future anticipated volume or quantity requirements for goods. Seller acknowledges that any such forecasts are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like any other forward looking projections, are based on a number of economic and business factors, variables and assumptions, some or all of which may change over time. Buyer makes no representation, warranty, guaranty or commitment of any kind or nature, express or implied, regarding any such forecasts provided to Seller,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such forecasts.

3. 사양서, 설계 및 범위의 변경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검사, 실험 또는 품질관리와 관련된 작업을 포함하여 물품의 사양서나 설계에 대한 변경 또는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나 작업에 대한 범위의 변경을 언제든지 실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구매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서 변경사항을 공급자와 상의하도록 노력하고, 공급자는 그러한 변경작업을 즉시 실행하도록 한다. 구매자는 그러한 변경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 16조에 정의되어 있는) 공급자의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개조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변경작업으로 인한 가격 및 인도계획을 공정하게 조정한다. 가격 또는 인도계획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공급자의 생산비용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 및 그러한 변경 실행시기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변경문제에 의해 이견이 있는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는 성실하게 그러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단, 구매자와 공급자가 그러한 변경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는 동안에도 공급자는 물품을 제조하여 인도하고 구매자가 요구하는 변경을 즉시 실행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한다.

3. SPECIFICATION, DESIGN AND SCOPE CHANGES

Buyer may at any time require Seller to implement changes to the specifications or design of the goods or to the scope of any services or work covered by this Contract, including work related to inspection, testing or quality control. While Buyer will endeavor to discuss any such changes with Seller as early as practical, Seller will promptly implement such changes. Buyer will equitably determine any adjustment in price or delivery schedules resulting from such changes, including Buyer's payment of reasonable costs of modifications to Seller's Equipment (as defined in Article 16) necessary to implement such changes. In order to assist in the determination of any equitable adjustment in price or delivery schedules, Seller will, as requested, provide information to Buyer, including documentation of changes in Seller's cost of production and the time to implement such changes. In the event of any disagreement arising out of such changes, Buyer and Seller will work to resolve the disagreement in good faith, provided, however, that Seller will continue performing under this Contract, including the manufacture and delivery of goods and prompt implementation of changes required by Buyer, while Buyer and Seller resolve any disagreement arising out of such changes.

4. 품질 및 검사

공급자는 구매자의 공급자 품질 및 개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구매자가 수시로 규정하는 기술 허가, 및 구매자의 생산파트 승인 공정을 포함하는 인가요건 및 절차를 준수한다. 공급자는 구매자와 구매자의 대리인 및 컨설턴트로 하여금 적정한 시간에 공급자의 시설을 출입하여 시설 및 본 계약과 관련이 있는 물품, 재고목록, 작업 중 물품, 자재, 기계, 장비, 도구, 기구, 계량기 등 기타 품목과 공정을 검사하도록 허용한다. 구매자의 이러한 검사는 작업 중 물품 또는 완성된 제품을 최종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아니한다.

4. QUALITY AND INSPECTION

Seller will participate in Buyer's supplier quality and development program(s) and comply with all engineering release and valid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including Buyer's 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es, which Buyer specifies from time to time. Seller will permit Buyer and its representatives and consultants to enter Seller's facilities at reasonable times to inspect such facilities and any goods, inventories, work-in-process, materials, machinery, equipment, tooling, fixtures, gauges and other items and processes related to Seller's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No such inspection by Buyer will constitute acceptance by Buyer of any work-in-process or finished goods.

5. 부적합 물품

구매자는 물품에 대한 검수를 꼭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그러한 검사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상의 물품을 어떠한 물품과도 대체할 수 없다. 구매자가 물건이 부적합하여 이를 거절하는 경우, 구매자는 선택적으로 (가) 본 계약에 따라 주문된 물품의 양을 부적합한 물품의 양만큼 감소시키거나, (나) 공급자에게 부적합 물품을 대체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다) 달리 적절한 권리나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다. 구매자가 부적합한 물품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또는 경우에 따라 적절히 더 짧은 기간 내에) 공급자로서는 구매자가 부적합한 물품을 처분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못할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부적합한 물품을 처리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구매자는 부적합한 물품을 공급자의 비용으로 공급자에게 반품할 수 있다. 판매자는 모든 부적합한 물품에 대한 모든 손실위험을 부담하고 부적합한 물품을 반환, 보관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구매자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즉시 지급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구매자가 부적합 물품에 대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여도, 구매자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구매자가 부적합 물품에 대한 권리나 구제책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 또는 침해되지 않으며, 또한 부적합 물품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5. NON-CONFORMING GOODS

Buyer is not required to perform incoming inspections of any goods, and Seller waives any right to require Buyer to conduct any such inspections. Seller will not substitute any goods for the goods covered by this Contract unless Buyer consents in writing. If Buyer rejects any goods as non-conforming, Buyer may, at its option, (a) reduce the quantities of goods ordered under this Contract by the quantity of non-conforming goods, (b) require Seller to replace the non-conforming goods, and/or (c) exercise any other applicable rights or remedies. If Seller fails to inform Buyer in writing of the manner in which Seller desires that Buyer dispose of non-conforming goods within forty-eight (48) hours of notice of Buyer's rejection of non-conforming goods (or such shorter period as is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Buyer will be entitled to dispose of the non-conforming goods without liability to Seller, provided, however, that in any event Buyer may elect to arrange for the shipment of any non-conforming goods

back to Seller at Seller's expense. Seller will bear all risk of loss with respect to all non-conforming goods and will promptly pay or reimburse all costs incurred by Buyer to return, store or dispose any non-conforming goods. Buyer's payment for any non-conforming goods will not constitute acceptance by Buyer, limit or impair Buyer's right to exercise any rights or remedies, or relieve Seller of responsibility for the non-conforming goods.

6. 불가항력

관련 당사자가 적절히 통제하기에 불가능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 또한 그러한 관련 당사자의 과실이나 태만 없이, 공급자가 본 계약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 또는 인도할 수 없거나 구매자가 본 계약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인도, 구매 또는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한 본 계약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은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가 지속되는 동안은 문제 삼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당사자는 사건이나 사고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어떠한 경우에도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지체(예상되는 지체기간을 포함)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는 예컨대 천재지변, 화재, 홍수, 태풍, 악천후, 폭발, 폭동, 전쟁, 파괴행위, 노동문제 (직장폐쇄, 파업 및 태업을 포함), 장비고장 및 전력 공급 중단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동안, 구매자는 (가) 다른 이용 가능한 공급원 으로부터 물품을 대체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계약에 따른 물량은 그러한 대체물품의 양만큼 감소되고 공급자는 대체물품을 취득한 구매자에게 본 계약에 명시된 가격과 비교하여 추가비용을 변상하며, (나) 공급자로 하여금 구매자가 요구하는 물량과 시기에 맞추어 본 계약에 명시된 가격으로 대체물품을 다른 이용 가능한 공급원 으로부터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공급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납품이 30일 이상 지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절히 보장해주지 못하거나 납품지체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구매자는 조항 11항에 따라서 공급자에 대한 책임이나 원자재, 작업 중 물품 또는 완제품을 구매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급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 그리고 구매자에 대한 물품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급자 시설에서의 임박한 파업, 노동쟁의, 휴업 또는 기타 중단을 공급자가 예상하거나 알게 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급자는 그러한 중단이 시작된 후 최소한 30일 동안 구매자에게 물품공급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물량의 완제품 재고를 생산한다. (또한 그러한 혼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그러한 재고를 비치한다.)

6. FORCE MAJEURE

If Seller is unable to produce, sell or deliver any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is Contract, or Buyer is unable to accept delivery, buy or use any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is Contract, as a result of an event or occurrence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affected party and without such party's fault or negligence, then any delay or failure to perform under this Contract that results from such event or occurrence will be excused for only so long as such event or occurrence continues, provided, however, that the affected party gives written notice of each such delay (including the anticipated duration of the delay) to the other party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event or occurrence (but in no event more than three (3) days thereafter). Such events and occurrences may include, by way of example and not limitation, natural disasters, fires, floods, windstorms, severe weather, explosions, riots, wars, sabotage, labor problems (including lockouts, strikes and slowdowns), equipment breakdowns and power failures. During any delay or failure to perform by Seller, Buyer may (i) purchase substitute goods from other available sources, in which case the quantities under this Contract will be reduced by the quantities of such substitute goods and Seller will reimburse Buyer for any additional costs to Buyer of obtaining the

substitute goods compared to the prices set forth in this Contract and/or (ii) have Seller provide substitute goods from other available sources in quantities and at times Buyer requests and at the prices set forth in this Contract. If Seller fails to provide adequate assurances that any delay will not exceed thirty (30) days or if any delay lasts more than thirty (30) days, Buyer may terminate this Contract without any liability to Seller or obligation to purchase raw materials, work-in-process or finished goods under Section 11. Before any of Seller's labor contracts expire and as soon as Seller anticipates or learns of any impending strike, labor dispute, work stoppage or other disruption at Seller's facilities that might affect the delivery of goods to Buyer, Seller will produce (and locate in an area that will not be affected by any such disruption) a finished inventory of goods in quantities sufficient to ensure the supply of goods to Buyer for at least thirty (30) days after such disruption commences.

7. 보증

7.1 일반사항 :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한 물품 및 서비스가 (가) 구매자의 관련 사양서 및 도면의 그 당시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보내준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 또는 수정 사항과 일치하고, (나) 공급자나 구매자가 제공한 모든 샘플, 설명, 책자 및 매뉴얼과 일치하고, (다) 시장성이 있고, (라) 양질의 자재와 기술로 만들어지고, (마) 하자가 없으며, (바) 구매자와 구매자의 고객이 의도한 특정 목적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것을 구매자, 구매자의 승계인, 양수인 및 고객들에게 확인하고 보증한다.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적합한 물품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를 처리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7. WARRANTY

7.1 General. Seller warrants and guarantees to Buyer, its successors, assigns and customers that the goods and services covered by this Contract will (a) conform to the then current release/revision level (based on date Buyer's release is issued to Seller) of Buyer's applicable specifications and drawings, (b) conform to all samples, descriptions, brochures and manuals furnished by Seller or Buyer, (c) be merchantable, (d) be of good material and workmanship, (e) be free from defect, and (f) be fit and sufficient for the particular purposes intended by Buyer and any customer of Buyer. If requested by Buyer, Seller will enter into a separate agreement for the administration or processing of warranty chargebacks for nonconforming goods.

7.2 보증기간 : 자동차나 다른 완제품의 부품, 구성품, 또는 시스템으로 사용되거나 통합된 제품의 경우, 보증기간은 구매자에게 제품이 교부된 시점부터 개시되며, 조항 7.4에서 규정된 경우나 구매자 측의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부품, 구성품, 또는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나 완제품이 처음 고객에게 판매 및 배송하거나 기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된 날로부터 48개월 후에 만료된다. 단, 구매자가 관련 부품이나 구성품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위 기간보다 더 연장된 보증기간을 부여해 줄 경우에는 그 연장된 보증기간이 적용될 것이다. 다른 용도로 공급되는 제품의 경우 보증기간은 달리 구매자 측의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해 서면으로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는 한 관련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7.2 Warranty Period. In the case of goods supplied for use as, or incorporation into, parts, components or systems for automotive vehicles or other finished products, the period for each of the foregoing warranties will commence upon delivery of the goods to

Buyer and,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7.4 or as otherwise expressly agreed in writing by an authorized employee of Buyer, end forty-eight (48) months following the date the vehicle or other finished product on which such parts, components or systems are installed is first sold and delivered or otherwise utilized for consumer or commercial purposes, provided, however, that if Buyer offers and provides a longer warranty to its customers with respect to any such parts, components or systems, then such longer warranty period will apply to the goods. In the case of goods supplied for other uses, the period for each of the foregoing warranties will be that provided by applicable law unless otherwise expressly agreed in writing by an authorized employee of Buyer.

7.3 구체책과 피해 : 만일 어떤 제품이 본 계약서에 규정된 보증에 위반된다고 합리적으로 (통계 분석이나 기타 샘플 방식의 사용을 포함하여) 판정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그러한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구매자가 입은 손실액이나 비용 및 피해액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변상해야 한다. 그러한 비용 및 피해액에는 (가) 부적합 제품이나 그러한 제품에 들어간 구성품이나 시스템에 대한 검사, 분류, 수리 또는 교체로 인한, (나) 제품 생산에 초래된 지장이나 지체로 인한, (다) 자동차나 구성 시스템의 오프라인으로 인한, (라) 현장 서비스나 기타 수리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구매자 및(또는) 고객의 비용, 경비 및 손실액이 포함되며, 이에 는 자재 및 교체품과 그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공임비, 그리고 대리점 및/또는 딜러들에게 지급된 금액(행정 비용이나 기타 지출 경비에 대한 합리적인 가산액을 포함해서)도 포함된다.

7.3 Remedies and Damages. If any goods are reasonably determined (including by use of statistical analysis or other sampling methodology) to fail to conform to the warranties set forth in this Contract, Seller shall reimburse Buyer for all reasonable losses, costs and damages caused by such nonconforming goods. Such costs and damages may include, without limitation, costs, expenses and losses of Buyer and/or its customers arising from (i) inspection, sorting, repair or replacement of any nonconforming goods or any system or component that incorporates such nonconforming goods, (ii) production interruptions or slowdowns, (iii) offlining of vehicles or component systems, and (iv) field service campaigns and other corrective service action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amounts paid to distributors and/or dealers for materials and replacement parts (including reasonable markup to recover administrative costs or other capital expenses) and the labor costs to perform such work.

7.4 리콜 : 조항 7.2에 규정한 보증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및/또는 관련 제품이나 부품, 구성품 또는 시스템으로 구성된 제품을 장착한 자동차나 완제품의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정부 명령에 응하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차량 안전 혹은 관련 법이나 안전기준 또는 지침의 미준수와 관련된 결함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이른바 "리콜"), 공급자는 이러한 리콜로 인한 비용 및 손해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제품이 본 계약에서 정한 보증에 위반된다는 합리적인 (통계 분석이나 기타 샘플 방식의 사용을 포함하여) 판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리콜과 관련하여서만 발생한다.

7.4 Recalls. Notwithstanding the expiration of the warranty period set forth in Section 7.2, if Buyer and/or the manufacturer of the vehicles (or other finished product) on which the goods, or any parts, components or systems incorporating the goods, are installed, voluntarily or pursuant to a government mandate, makes an offer to owners of such vehicles to provide remedial action to address a defect that relates to motor vehicle safety or the failure of the vehicle to comply with any applicable law, safety standard or guideline (a so-called "recall"), Seller will nonetheless be liable for costs and damages associated with the conduct of such recall to the extent that such recall is based upon a reasonable

determination (including by use of statistical analysis or other sampling methodology) that the goods fail to conform to the warranties set forth in this Contract.

8. 원재료 및 위험 물질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시하는 양식과 세부 내용으로 (가) 물품의 모든 원재료 목록, (나) 모든 원재료의 양, 및 (다) 원재료의 변경 또는 원재료에 대한 추가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선적 이전 그리고 선적과 함께, 구매자와 모든 운송인에게 해당 법적 요건을 알리고 구매자와 모든 운송인이 물품, 컨테이너 및 포장의 취급, 운송, 처리, 사용 또는 처분과정에서 신체적 상해나 재산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물품의 재료 및 일부분을 구성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충분한 서면 경고와 통지(상품, 컨테이너 및 포장에 대한 적절한 식별표 포함)를 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특별취급 지시서, 안전조치 및 사전예방책과 함께 구매자와 모든 운송인에게 제공한다.

8. INGREDIENTS AND HAZARDOUS MATERIALS

If Buyer requests, Seller will promptly furnish to Buyer, in such form and detail as Buyer directs: (a) a list of all ingredients in the goods, (b) the amount of all ingredients, and (c) information concerning any changes in or additions to the ingredients. Prior to, and together with, the shipment of the goods, Seller will furnish to Buyer and all carriers sufficient written warning and notice (including appropriate labels on the goods, containers and packing) of any hazardous material that is an ingredient or a part of any of the goods, together with all special handling instructions, safety measures and precautions as may be necessary to comply with applicable law, to inform Buyer and all carriers of any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and to best allow Buyer and all carriers to prevent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in the handling, transportation, processing, use or disposal of the goods, containers and packing.

9. 공급자의 지급불능

다음과 같거나 혹은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 구매자는 조항 11항에 따라서 공급자에 대한 책임이나 원자재, 작업 중 물품 또는 완제품을 구매할 의무를 지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공급자의 지급불능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나) 공급자에 의한 자발적인 파산신청, (다) 공급자를 상대로 한 비자발적 파산신청, (라) 공급자의 재산관리인이나 수탁자 임명, (마) 공급자의 채권단을 위한 양도실행, (바)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본 계약에서 고려되지 아니한 화해 또는 조정(accommodation)(재정적 내용 혹은 기타 내용을 모두 포함)을 구매자가 제공할 경우. 공급자는 본 계약의 해지여부와 무관하게 전술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구매자에게 배상하기로 하며, 이러한 비용에는 모든 변호사 수임비용이나 기타 전문가 용역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9. INSOLVENCY OF SELLER

In any of the following or any similar events Buyer may immediately terminate this Contract without any liability to Seller or obligation to purchase raw materials, work-in-process or finished goods under Section 11: (a) insolvency or financial difficulties of Seller, (b) filing of a voluntary petition in bankruptcy by Seller, (c) filing of any involuntary petition in bankruptcy against Seller, (d) appointment of a receiver or trustee for Seller, (e) execution of an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by Seller, or (f) any accommodation by Buyer, financial or otherwise, not contemplated by this Contract, that are necessary for Seller to

meet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tract. Seller will reimburse Buyer for all costs Buyer incurs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foregoing whether or not this Contract is terminat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ll attorney or other professional fees.

10. 계약위반에 의한 해지

공급자가 (가) 공급자의 보증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조건을 거부,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거나 거부하는 경우, (나) 본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이행 및 인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 및 물품인도의 원료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체결 후 언제든지 조항 11항에 따라서 공급자에 대한 책임이나 원자재, 작업 중 물품 또는 완제품을 구매할 의무를 지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TERMINATION FOR BREACH

Buyer may terminate all or any part of this Contract without any liability to Seller or obligation to purchase raw materials, work-in-process or finished goods under Section 11 if Seller (a) repudiates, breaches, or threatens to breach any of the terms of this Contract, including Seller's warranties, (b) fails to perform or threatens not to perform services or deliver goods in accordance with this Contract or (c) fails to assure timely and proper completion of services or delivery of goods.

11. 임의 해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매자의 다른 권리와 함께,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즉시, 구매자는 사용이 가능하고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서 본 계약상의 물품과 관련이 있는 모든 원자재, 작업 중 물품 및 완제품 재고를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그러한 완제품, 원재료 및 작업 중 물품의 구매가격과 계약 해지로 인해 공급자가 해지와 관련하여 구매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손해배상 (공급자의 보상 청구에 기초가 되는 법리와 관계 없이 본 조항에서 명시한 것 이외에 구매자는 해지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은 (가) 해지일 현재 본 계약에 따라 완성, 인도 되어 구매자가 인수하고 전에 대금지급이 되지 않은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의 계약가격에, (나) 본 계약에 의거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급자가 부담한 작업 중 물품 및 원료의 실비를 합산한 후, -- 그러한 비용이 금액면에서 적절하고 본 계약의 해지된 부분까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상 적절히 분배되거나 할당될 수 있는 범위에 한함 -- (다) 구매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공급자가 사용하거나 판매한 물품 또는 자재의 합리적인 가격이나 비용(둘 중에 높은 금액)을 뺀 가격으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는 구매자가 인도 주문에서 승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공급자가 제작하거나 조달한 완제품, 작업 중 물품 또는 원재료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공급자의 표준재고에 속하거나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 및 자재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은 해지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인도 또는 주문 일정에 따라 공급자가 생산하였을 완제품의 총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해지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매자는 구매자에 의한 감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조자료와 함께 포괄적인 해지 관련 구매자에 대한 금전 청구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TERMINATION FOR CONVENIENCE

In addition to any other rights of Buyer to terminate this Contract, Buyer may immediately terminate all or any part of this Contract, at any time and for any reason, by notifying Seller in writing. Upon such termination, Buyer may, at its option, purchase from

Seller any or all raw materials, work-in-process and finished goods inventory related to the goods under this Contract which are useable and in a merchantable condition. The purchase price for such finished goods, raw materials and work-in-process, and Seller's sole and exclusive recovery from Buyer (without regard to the legal theory which is the basis for any claim by Seller) on account of such termination, will be (a) the contract price for all goods or services that have bee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tract as of termination date and delivered and accepted by Buyer and not previously paid for, plus (b) the actual costs of work-in-process and raw materials incurred by Seller in furnishing the goods or services under this Contract to the extent such costs are reasonable in amount and are properly allocable or apportionable under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to the terminated portion of this Contract less (c) the reasonable value or cost (whichever is higher) of any goods or materials used or sold by Seller with Buyer's written consent. In no event will Buyer be required to pay for finished goods, work-in-process or raw materials which Seller fabricates or procures in amounts that exceed those Buyer authorizes in delivery releases nor will Buyer be required to pay for any goods or materials that are in Seller's standard stock or that are readily marketable. Payments made under this Article will not exceed the aggregate price for finished goods that would be produced by Seller under delivery or release schedules outstanding at the date of termination. Within sixty (60) day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ermination, Seller will submit a comprehensive termination claim to Buyer, with sufficient supporting

12. 기술 정보

12.1 공급자가 공개한 정보 : 공급자는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 지거나 물품의 이용과 관련해서 구매자가 요구하는 물품과 제조에 관한 모든 기술 정보를 구매자의 설계 및 수확자료 기준을 준수하여 만들고, 유지하고, 갱신하고, 제공할 것이다. 이에는 자동생산이나 기타 응용에 필요하고 법적이거나 규제 조치와도 일치하는 기술 검증 및 상품 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나 여기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술 정보는 아래 12.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나 공개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

12. TECHNICAL INFORMATION

12.1 Information Disclosed by Seller. Seller will create, maintain, update, and provide to Buyer, in compliance with Buyer's drafting and math data standards, all technical information about the goods and their manufacture which is reasonably necessary or requested by Buyer in connection with its use of the good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engineering validation and qualification of the goods for automotive production and other applications and compliance with any legal or regulatory requirements. Such technical information will not be subject to any use or disclosure restrictions,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12.2 below.

12.2 청구권의 포기 : 공급자는 본 계약상의 물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공개하였거나 향후 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술정보와 관련해서 구매자, 구매자의 고객 또는 그들 각자의 공급업자를 상대로 하여 (특히권 침해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2.2 Waiver of Claims. Seller agrees not to assert any claim (other than a claim for patent infringement) against Buyer, Buyer's customers or their respective suppliers with respect to any technical information that Seller shall have disclosed, or may hereafter disclose,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is Contract.

12.3 수리 및 개조 :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인도된 물품과 제품을 공급자에 대한 로열티나 기타 보상금의 지급 없이 수리, 개조 또는 개축할 수 있는 권한을 구매자, 구매자의 계열회사, 대리인 및 하청업자, 구매자의 고객과 그들의 하청업자에게 부여한다.

12.3 Repair and Rebuild. Seller authorizes Buyer, its affiliates, agents and subcontractors, and Buyer's customers and their subcontractors to repair, reconstruct or rebuild the goods and products delivered under this Contract without payment of any royalty or other compensation to Seller.

12.4 소프트웨어 및 서면 저작물 : 공급자는 물품의 사용 및 판매와 관련하여 물품에 포함된 운영 소프트웨어를 사용, 수리, 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영구적인 지불완료 라이선스를 구매자에게 부여한다. 그에 더해,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또는 물품과 부품의 한 부분으로 창출된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목적 코드, 마이크로 코드, 소스코드 및 데이터 구성을 포함)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하지 않는 모든 저작물은 물론 그에 대한 모든 개정판, 수정판, 갱신판 및 기타 서면 저작물, 제품 또는 자재는 "직무발명"이며 또한 구매자의 독점 재산이다. 그러한 저작물이 관련 법규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자는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의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한다. 만일 그러한 양도가 관련법규에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급자는 관련 저작물과 관련하여 사용료 없는 독점적인 라이선스를 구매자에게 부여한다.

12.4 Software and Written Works. Seller grants to Buyer a permanent, paid-up license to use, repair, modify and sell any operating software incorporated in the goods in conjunction with the use or sale of the goods. In addition, all works of authorship,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software, computer programs and databases (including object code, micro code, source code and data structures), and all enhancements, modifications and updates thereof and all other written work products or materials, which are creat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is Contract, separately or as part of any goods and components, are "works made for hire" and the sole property of Buyer. To the extent that such works of authorship do not qualify under applicable law as works made for hire, Seller hereby assigns to Buyer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uch works of authorship. If such assignment is not possible under any applicable law, Seller hereby grants an exclusive, royalty-free license to Buyer with respect to such works of authorship.

12.5 개발, 엔지니어링 및 상담서비스 : 아이디어, 발명, 개념, 발견, 저작물, 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노하우 또는 기타 지적재산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자금 지원되는 엔지니어링, 상담 또는 개발 서비스("개발 서비스")는 구매자의 독점 재산으로 한다. 판매자는 개발 서비스로부터 창출된 지적재산 ("개발된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개발된 지적재산의 존재를 알리고 구매자가 개발된 지적재산을 완성, 등록 및/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요청하는 모든 추가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발된 지적재산에 대한 구매자의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매자를 모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구매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자가 지출한 적절한 비용을 공급자에게 상환한다.

12.5 Development, Engineering And Consulting Services. Engineering, consulting or development services ("Development Services") funded under this Contract that result in any idea, invention, concept, discovery, work of authorship, patent, copyright, trademark, trade secret, know-how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IP") shall be the sole property of Buyer. Seller agrees

to assign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IP that results from Development Services ("Developed IP") to Buyer. Seller shall notify Buyer of the existence of Developed IP and assist Buyer in every reasonable way to perfect its right, title and interest in Developed IP, such as by executing and delivering all additional documents reasonably requested by Buyer in order to perfect, register, and/or enforce the same, and Buyer shall reimburse Seller for reasonable costs incurred by Seller in providing such assistance.

13. 면책

13.1 **침해** : 공급자는 공급자가 물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분만을 제공한 상황에서의 청구 등을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물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침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상업적 도의, 산업디자인권, 기타 소유권, 또는 영업비밀의 오용이나 남용 등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손해와 비용(변호사비용, 기타 전문가 용역비용 및 지출 등을 포함)의 청구로부터 구매자, 구매자의 고객, 그들 각자의 승계인과 양수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책임을 면제하며 그들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한다. 공급자는 위 침해가 구매자의 사양서를 준수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구매자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13. INDEMNIFICATION

13.1 **Infringement**. Seller will defend, hold harmless and indemnify Buyer and its customers, and their respective successors and assigns, against any claims of infringement (including patent, trademark, copyright, moral, industrial design or other proprietary rights, or misuse or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 and resulting damages and expens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ttorney and other professional fees and disbursements) relating to the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is Contract, including any claims in circumstances where Seller has provided only part of the goods or services. Seller waives any claim against Buyer that any such infringement arose out of compliance with Buyer's specifications.

13.2 **구매자의 영업장소에서의 활동** :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 고객의 영업장소 내에서 공급자, 공급자의 종업원, 대리인, 대표 및 하도급업자가 서비스나 작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러한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 청구, 요구, 손해, 비용 또는 경비(적절한 변호사비용, 기타 전문가 용역비용 및 지출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하지 않음)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면책하며 구매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단 그러한 책임이 구매자나 구매자 고객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3.2 **Activities on Buyer's Premises**. Seller will defend, hold harmless, and indemnify Buyer from and against any liability, claims, demands, damages, costs or expens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reasonable attorney and other professional fees and disbursement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any service or work by Seller or its employees, agents, representatives and subcontractors on Buyer's or Buyer's customer's premises or the use of the property of Buyer or any customer of Buyer, except to the extent such liability arises out of the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of Buyer or Buyer's customer.

13.3 **제조물 책임** : 공급자는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이나 서비스로 인하여 야기된 인적 상해, 사망, 재산피해 또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제 3자의 청구나 요구로 인하여 또는 그러한 청구나 요구와 관련하여 발생된 (그러한 청구나 요구가 불법행위, 태만, 계약, 보증, 엄격한 책임 또는 기타 법률적 이론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이를 불문함) 제반 책임과 비용(변호사 비용, 기타 전문가 용역비용 및 지출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하지 않음)으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면책하며 구매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다만, 그러한 상해, 사망 또는 손실이 구매자의 설계나 자재에 대한 설명서에 기인한 것이거나 판매자가 아닌 자에 의한 변경, 부적절한 수리, 정비유지 또는 설치로 인하여 야기된 것인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

13.3 **Product Liability**. Seller will defend, hold harmless, and indemnify Buyer from and against any liability and expens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ttorney and other professional fees and disbursement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any third party claims or demands to recover for personal injury or death, property damage or economic loss caused by any of the goods or services supplied by Seller (regardless of whether such claim or demand arises under tort, negligence, contract, warranty, strict liability or any other legal theories), except to the extent such injury, damage or loss results from Buyer's specifications as to design or materials or from alteration or improper repair, maintenance or installation by any party other than Seller.

14. 법규 준수

공급자 및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과 서비스는 환경문제, 임금, 고용시간 및 조건, 하도급업자 선정, 차별, 업무상 건강/안전 및 차량 안전문제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하지 않고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조, 레이블 부착, 운송, 수입, 수출, 면허, 승인, 업무수행 또는 증명과 관련된 제조국가 및 종착국가의 해당 법규, 규칙, 규정, 명령, 관례, 조례 및 기준을 준수한다. 공급자나 공급자의 하도급업자 가운데 어느 한 당사자도 본 계약에 따라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강제노역자, 수감자 또는 기타 강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노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구매자의 요청 시 공급자는 상기의 준수 여부를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거나 관련된 제반 책임과 비용(변호사 비용, 기타 전문가 용역비용 및 지출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하지 않음)으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면책하며 구매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14. COMPLIANCE WITH LAWS

Seller, and any goods or services supplied by Seller, wi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rules, regulations, orders, conventions, ordinances and standards of the country(ies) of origin and destination or that relate to the manufacture, labeling, transportation, importation, exportation, licensing, approval, performance and/or certification of the goods or servi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relating to environmental matters, wages, hour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subcontractor selection, discrimination, occupational health/safety and motor vehicle safety. Neither Seller nor any of its subcontractors will utilize slave, prisoner or any other form of forced or involuntary labor in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under this Contract. Upon Buyer's request, Seller will certify in writing its compliance with the foregoing. Seller will defend, hold harmless and indemnify Buyer from and against any liability, claims, demands, damages or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 or other professional fees and disbursements) arising from or relating to Seller's noncompliance with this Article.

15. 보험

공급자는 구매자가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운송업자와 함께 구매자가 적절하게 요청하거나 해당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을 유지한다. 그러한 보험과 관련하여,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전술한 보험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나 모든 보험증권의 인증된 사본을 구매자가 요청한 후 10일 내에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증명서에는 해지, 보험금의 감액, 또는 부보 범위 감축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보험자로부터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보험증권의 제공과 보험의 가입은 본 계

약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제한되거나 면제하지 아니한다.

15. INSURANCE

Seller will maintain insurance coverage a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s reasonably requested by Buyer with carriers reasonably acceptable to Buyer. With respect to any such insurance coverage, Seller will furnish to Buyer either a certificate evidencing satisfaction of the above-mentioned insurance requirements under this Contract or certified copies of all insurance policies within ten (10) days after Buyer requests. The certificate must provide that Buyer will receive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from the insurer of any termination or reduction in the amount or scope of coverage. The furnishing of certificates of insurance and purchase of insurance will not limit or release Seller from Seller's obligations or liabilities under this Contract.

16. 공급자의 장비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공구, 치공구, 금형, 계기, 주형, 모형, 설비, 기타 부속물 등을 포함한 모든 기계와 장비(총칭하여, "판매자의 장비")를 필요한 때 공급자의 비용으로 제공하며,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교체한다. 공급자는 공급자의 장비를 완전하게 대체하도록 보장할만한 가격의 화재 및 연장보험에 가입한다. 공급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본 계약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공급자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권을 갖도록 한다. 이 경우에 구매자는 공급자가 장비를 인도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가) 그러한 공급자의 장비의 순장부가치(예를 들어, 실제 지출 비용에서 감가상각된 부분을 공제한 금액)나, (나) 그러한 공급자의 장비의 당시 공정한 시장가치 중에서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되, 각 경우에 있어서 구매자가 그러한 공급자의 장비 대금으로 이전에 지급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택권은 공급자의 장비가 공급자의 표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고, 그 표준 제품이 다른 고객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매자가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할 권리는 공급자의 계약위반이나 구매자의 계약해지,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지급만기가 도래한 기타 대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16. SELLER'S EQUIPMENT

Seller, at its expense, will furnish, keep in good condition, and replace when necessary all of its machinery and equipment, including related tooling, jigs, dies, gauges, fixtures, molds, patterns and other accessories, required for the production of goods covered by this Contract (collectively, "Seller's Equipment"). Seller will insure Seller's Equipment with fire and extended coverage insurance for its full replacement value. Seller grants Buyer an irrevocable option to take possession of, and title to, all or part of Seller's Equipment that is specially designed or outfitted for the production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Contract, in which event Buyer will, within 45 days following delivery of such Seller's Equipment to Buyer, pay to Seller of the lower of (i) the net book value of such Seller's Equipment (i.e., actual cost less amortization) or (ii) then current fair market value of such Seller's Equipment, in each case less any amounts that Buyer has previously paid to Seller on account of such Seller's Equipment. The foregoing option will not apply to the extent that Seller's Equipment is used to produce goods that are the standard stock of Seller and are then being sold by Seller to other customers. Buyer's right to exercise the foregoing option is not conditioned on Seller's breach or Buyer's termination of this Contract or upon payment of any other amounts due under this Contract.

17. 구매자의 재산 및 정보

17.1 공구 및 자재의 인수 :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또는 향후 물품을 공급하는 일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공구, 치공구, 금형, 계기, 설비, 주형, 모형, 장비, 부속물, 자재 및 기타 품목(총칭하여, "공구 및 자재") 중 본 계약에서 구매자에게 구입을 허용하는 범위나 또는 공급자에게 변상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는 구매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러한 공구 및 자재를 인수하며, 구매자는 (가) 해당 공구 및 자재에 관해 본 계약에서 명시하는 액수나 (나) 공급자가 관계 없는 제 3자로부터 공구 및 자재를 인수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일시불 비용, 또는 공급자나 공급자의 계열회사에서 이러한 공구 및 자재를 제조하였을 경우 자재, 노동, 간접비로 지출된 실질적인 직접원가 중에서 더 낮은 가격을 공급자에게 지불하거나 변상한다. 공급자는 위와 같은 공구 및 자재와 관련하여 이권을 가지고 있는 계약 상의 권리나 청구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한다. 공급자는 앞서 언급된 공급자의 비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타당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매자나 그 대리인은 모든 장부, 기록, 시설, 작업, 자재, 재고목록, 그 외 공구 및 자재와 관련된 기타 항목을 검사하고 조사할 권리가 있다. 공급자가 그러한 공구 및 자재를 인수할 시, 그에 따른 소유권은 즉시 구매자에게 귀속되며 그러한 공구 및 자재는 본 계약17조와 일치하게 공급자가 "구매자의 재산"으로 보관한다.

17. BUYER'S PROPERTY AND INFORMATION

17.1 Acquisition of Tooling and Materials. To the extent that this Contract covers Buyer's purchase of, or reimbursement to Seller for, any tooling, jigs, dies, gauges, fixtures, molds, patterns, equipment, supplies, materials and other items (collectively, "Tooling and Materials") to be used in connection with Seller's actual or anticipated supply of goods to Buyer, Seller will acquire such Tooling and Materials as agent of Buyer and Buyer shall pay to or reimburse Seller the lower of (i) the amount specified in this Contract for such Tooling and Materials or (ii) Seller's actual out-of-pocket cost to acquire the Tooling or Materials from an unrelated third party or, if the Tooling and Materials are constructed or fabricated by Seller or any affiliate of Seller, the actual direct costs for materials, labor and overhead associated with such construction and fabrication. Seller shall assign to Buyer any contract rights or claims in which Seller has an interest with respect to such Tooling and Materials. Seller shall establish a reasonable accounting system that readily enables the identification of Seller's costs as described above. Buyer or its agents shall have the right to audit and examine all books, records, facilities, work, material, inventories and other items relating to any such Tooling and Materials. Upon Seller's acquisition of such Tooling and Materials, title thereto shall vest immediately in Buyer and such Tooling and Materials shall be held as "Buyer's Property" by Seller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17.

17.2 구매자의 재산과 관련된 공급자의 의무 : 구매자의 재산이 공급자의 점유 하에 있는 동안 그리고 공급자가 구매자의 재산을 구매자에게 반환할 때까지 공급자는 구매자 재산의 손실, 도난 및 손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재산이 그 사유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손상되거나 도난 당하거나 파손되는 경우, 구매자의 재산을 수리하거나 대체할 비용을 책임진다. 공급자는 언제든지 (가) 구매자의 재산을 공급자의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수리하고, (나) 구매자의 재산을 본 계약 이행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다) 구매자의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고, (라) 본 계약에 따른 구매자의 재산을 구매자의 재산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러한 표시를 유지하고, (마) 구매자의 재산을 공급자의 재산이나 제 3자의 재산과 뒤섞지 아니하고, (바) 구매자의 재산을 구매자의 적법한 권한을 수여받은 피용인의 서면 승인 없이 공급자의 선적 장소(공급자의 선적 주소로

명시되어 있는 대로)로부터 이동하지 아니하고, (사) 구매자의 재산을 구매자나 제작자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모든 연방법, 주법, 지방법, 조례 및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구매자는 구매자의 재산과 구매자의 재산에 대한 공급자의 기록을 검사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간에 언제든지 공급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할 권리를 갖는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재산을 판매하거나, 대여 및 임대하거나, 저당 및 담보로 잡히거나, 임차하거나, 옮기거나, 달리 처분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공급자는 구매자의 재산이나 그에 관한 어떠한 이권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제 3자가 공급자를 통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없다.

17.2 Bailment of Buyer's Property. All Tooling and Materials which Buyer furnishe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o Seller or which Buyer buys from, or gives reimbursement to, Seller in whole or in part (collectively, "Buyer's Property") will be and remain the property of Buyer and be held by Seller on a bailment basis. Title to all replacement parts, additions, improvements and accessories purchased by Seller will vest in Buyer immediately upon attachment to or incorporation into Buyer's Property. When permitted by law, Seller waives any lien or other rights that Seller might otherwise have on or in any of Buyer's Property for work performed on, or utilizing, such property or otherwise.

17.3 구매자의 재산과 관련된 공급자의 의무 : 구매자의 재산이 공급자의 점유 하에 있는 동안 그리고 판매자가 구매자의 재산을 구매자에게 반환할 때까지 공급자는 구매자 재산의 손실, 도난 및 손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재산이 그 사유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손상되거나 제 3자의 재산과 뒤섞이지 아니하고, (가) 구매자의 재산을 수리하거나 대체할 비용을 책임진다. 공급자는 언제든지 (가) 구매자의 재산을 공급자의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수리하고, (나) 구매자의 재산을 본 계약 이행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다) 구매자의 재산을 사유 재산으로 간주하고, (라) 본 계약에 따른 구매자의 재산을 구매자의 재산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러한 표시를 유지하고, (마) 구매자의 재산을 공급자의 재산이나 제 3자의 재산과 뒤섞이지 아니하고, (바) 구매자의 재산을 구매자의 적법한 권한을 수여받은 피용인의 서면 승인 없이 공급자의 선적 장소(판매자의 선적 주소로 명시되어 있는 대로)로부터 이동하지 아니하고, (사) 구매자의 재산을 구매자나 제작자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모든 연방법, 주법, 지방법, 조례 및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구매자는 구매자의 재산과 구매자의 재산에 대한 공급자의 기록을 검사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간에 언제든지 공급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할 권리를 갖는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재산을 판매하거나, 대여 및 임대하거나, 저당 및 담보로 잡히거나, 임차하거나, 옮기거나, 달리 처분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공급자는 구매자의 재산이나 그에 관한 어떠한 이권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제 3자가 공급자를 통해서 그러한 주장을 할 수도 없다.

17.3 Seller's Duties with Respect to Buyer's Property. While Buyer's Property is in Seller's possession and until Seller delivers Buyer's Property back to Buyer, Seller bears the risk of loss, theft and damage to Buyer's Property. Seller will be responsible for the cost of repairing or replacing Buyer's Property if it is stolen, damaged or destroyed regardless of cause or fault. Seller will at all times: (a) regularly inspect, maintain in good condition, and repair Buyer's Property at Seller's own expense, (b) use Buyer's Property only for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c) deem Buyer's Property to be personal property, (d) conspicuously mark Buyer's Property as the property of Buyer and maintain such markings, (e) not commingle Buyer's Property with the property of Seller or with that of a third person, (f) not move Buyer's Property from Seller's applicable shipping location (as shown by the shipping address of Seller) without prior written approval from an authorized employee of Buyer, and (g) use Buyer's Property in compliance with Buyer's or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and in compliance with all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ordinances and

regulations. Buyer will have the right to enter Seller's premises at all reasonable times to inspect Buyer's Property and Seller's records with respect thereto. Seller will not sell, lend, rent, encumber, pledge, lease, transfer or otherwise dispose of Buyer's Property. Furthermore, Seller will not assert, or permit any person claiming an interest through Seller to assert any claims of ownership to or any other interest in Buyer's Property.

17.4 구매자의 재산의 반환 : 공급자는 구매자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체의 지급 없이 언제든지 수시로, 구매자의 재산을 다시 점유하거나 구매자 재산의 반환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는 데 동의한다. 추가 통지나 법정 심리 없이,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해도 포기함으로써,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피지명인(들)은 공급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고 모든 구매자 재산을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 구매자가 요청하는 즉시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의 재산은 (가) 구매자의 재산을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선정한 운송업자의 요구대로 적절하게 포장되고 표시되어 공급자 공장에서 인도(Ex Works, Incoterms 1990)되거나, 또는 (나) 구매자가 구매자의 재산을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하기 위한 적절한 비용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에 의하여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즉시 구매자에게 양도되거나 인도된다. 공급자가 본 조항에 따라 구매자의 재산을 양도하고 인도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통지 및 일체의 담보물의 공탁 없이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집행권원을 얻는다. 그리고/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혹은 법적 절차 없이 공급자의 해당 지역에 들어가 즉각적인 점유를 취득하여 구매자의 자산을 즉시 점유할 수 있다.

17.4 Return of Buyer's Property. Seller agrees that Buyer has the right, at any time and from time to time, with or without reason and without payment of any kind, to retake possession of or request the return of Buyer's Property. Without further notice or court hearings, which rights, if any, are hereby waived, Buyer or its designee(s) will have the right to enter Seller's premises and take possession of any and all of Buyer's Property. Upon Buyer's request and in accordance with Buyer's instructions, Buyer's Property will be immediately released to Buyer or delivered to Buyer by Seller, either (i) Ex Works (IncoTerms 2000) at Seller's plant properly packed and mark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arrier selected by Buyer to transport such Buyer's Property or (ii) to any location Buyer designates, in which event Buyer will pay Seller the reasonable costs of delivering Buyer's Property to the location Buyer designates. If Seller does not release and deliver any Buyer's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Buyer may obtain an immediate writ of possession without notice and without the posting of any bond and/or enter Seller's premises, with or without legal process, and take immediate possession of Buyer's Property.

17.5 보증에 대한 포기 : 공급자는 (가) 구매자가 구매자 재산의 제작자나 제작자의 대리인 또는 판매상(딜러)이 아니며, (나) 구매자가 공급자를 위하여 구매자의 재산을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있고, (다) 공급자가 구매자의 재산이 그 목적에 합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라) **구매자가 구매자 재산의 적합성, 조건, 시장성, 설계나 작동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어떠한 형태의 보증이나 진술도 과거와 현재에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 구매자는 구매자 자산의 사용, 관리, 수리, 서비스나 조정 과정에서 초래되는 것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고 구매자의 재산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초래되거나 또는 예상된 손해, 이권 또는 기타 간접적이거나 특별하거나 부가적인 손해 또는 인명의 사상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하지 않고 서비스 중단 또는 제반 사업손실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초래된 제반 손실, 손해, 상해 또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5 Disclaimer of Warranties. Seller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i) Buyer is not the manufacturer of Buyer's Property nor the manufacturer's agent nor a dealer therein, (ii) Buyer is bailing Buyer's Property to Seller for Seller's benefit, (iii) Seller is satisfied that Buyer's Property is suitable and fit for its purposes, and (iv) BUYER HAS NOT MADE AND DOES NOT MAKE ANY WARRANTY OR REPRESENTATION WHATSOEVER, EITHER EXPRESS OR IMPLIED, AS TO THE FITNESS, CONDITION, MERCHANTABILITY, DESIGN OR OPERATION OF BUYER'S PROPERTY OR ITS FITNESS FOR ANY PARTICULAR PURPOSE. Buyer will not be liable to Seller for any loss, damage, injury or expense of any kind or nature caused, directly or indirectly, by Buyer's Property,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use or maintenance thereof, or the repair, service or adjustment thereof, or by any interruption of service or for any loss of business whatsoever or howsoever caus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loss of anticipatory damages, profits or any other indirect,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and/or personal injury or death.

17.6 구매자의 정보의 이용 : 공급자는 (가) (아래 정의된) 구매자의 모든 정보를 기밀로 하며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매자의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직원에게만 정보를 공개하고, (나) 구매자의 정보를 오직 구매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구매자의 정보를 토대로 생산된 물품은 구매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구매자의 직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공급자가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구매자의 정보"란 구매자가 공급자나 그 대표자, 하도급업자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 본 계약에 규정된 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로, 이에에는 가격책정 및 본 계약 상의 조건들, 시방서, 데이터, 공식, 구성물, 설계, 초안, 사진, 샘플, 프로토타입, 테스트 차량, 제조, 포장 및 선적상의 방법과 공정,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목적코드(object code)와 자료코드(source code) 포함)이 제한 없이 포함된다. 구매자의 정보에는 또한 구매자나 공급자, 또는 제 3자가 제공한 구매자의 정보를 담고 있거나 그에 기초한 기타 자재나 정보가 포함된다.

17.6 Use of Buyer's Information. Seller will (i) keep all Buyer's Information (as defined below) confidential and disclose it only to its employees who need to know such Buyer's Information in order for Seller to supply goods and services to Buyer under this Contract and (ii) use the Buyer's Information solely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goods and services to Buyer. Goods manufactured based on Buyer's Information may not be used for Seller's own use or sold by Seller to third parties without prior express written consent from an authorized employee of Buyer. "Buyer's Information" means all information provided to Seller by Buyer or its representatives or subcontractors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programs, goods and services covered by this Contrac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pricing and other terms of this Contract, specifications, data, formulas, compositions, designs, sketches, photographs, samples, prototypes, test vehicles, manufacturing, packaging or shipping methods and processes and computer software and programs (including object code and source code). Buyer's Information also includes any materials or information that contain, or are based on, any Buyer's Information, whether prepared by Buyer, Seller or any other person.

18. 서비스 및 교체부품

본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구매자의 고객 서비스 및 교체부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본 계약에 의한 당시 생산가격으로 구매자에게 판매한다. 물품이 시스템이나 모듈인 경우, 공급자는 그 총액이 시스템이나 모듈가격에서 조립비용을 뺀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시스템이나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을 판매한다. 본 계약에 의해 다루어지는 물품이 포함되는 차량생산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때 본 계약이 유효한 경우, 공급자는 그러한 차량생산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15 년 동안 ("생산 후 기간") 구매자와 구매자 고객의 서비스 및 교체부품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생산 후 기간동안 유효하게 지속된다. 생산 후 기간 중에 처음 5 년 동안, 그러한 물품의 가격은 생산 후 기간이 개시될 때 유효하였던 생산 가격으로 한다. 나머지 생산 후 기간 동안, 그러한 서비스 물품의 가격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합의된 바에 의한다.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서비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추가비용 없이 서비스 문헌과 기타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18. SERVICE AND REPLACEMENT PARTS

During the term of this Contract, Seller will sell to Buyer goods necessary to fulfill Buyer's service and replacement parts requirements to Buyer's customers at the then current production price(s) under this Contract. If the goods are systems or modules, Seller will sell the components or parts that comprise the system or module at price(s) that will not, in the aggregate, exceed the price of the system or module less assembly costs. If this Contract is in effect at the end of the vehicle production program into which the goods covered by the Contract are incorporated, Seller will also sell goods to Buyer to fulfill Buyer's and its customers' service and replacement parts requirements during the fifteen (15) year period following the end of such vehicle production program (the "Post-Production Period"), and this Contract will automatically remain in effect during the entire Post-Production Period. During the initial five (5) years of the Post-Production Period, the price(s) for such goods will be the production price(s) which were in effect at the commencement of the Post-Production Period. For the remainder of the Post-Production Period, the price(s) for such service goods will be as reasonably agreed to by the parties. If requested by Buyer, Seller will also make service literature and other materials available at no additional charge to support Buyer's service activities.

19. 구제수단 및 가치분 등

본 계약에서 구매자에게 유보된 권리와 구제수단은 보통법이나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다른 모든 추가적인 구제수단에 누적되고 부가되어지는 것이다. 본 계약이 부품, 구성품, 또는 시스템으로서 사용되거나 조립될 물품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한도 내에서,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일과 관련하여, 공급자에 의한 실질적인 계약 위반, 또는 예상되거나 우려가 있는 계약 위반에 대하여 금전적인 배상이 충분한 구제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또한 구매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에 더해져, 구매자는 특정 이행과 가치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구제를 그러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부여 받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19. REMEDIES AND INJUNCTIVE RELIEF

The rights and remedies reserved to Buyer in this Contract are cumulative with, and in addition to, all other or further remedies provided in law or equity. To the extent that this Contract is for the supply of goods for use as, or fabrication into, parts, components or systems, Seller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money damages would not be a sufficient remedy for any actual, anticipatory or threatened breach of this Contract by Seller with respect to its delivery of goods to Buyer and that, in addition to all other rights and remedies which Buyer may have, Buyer shall be entitled to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ve or other equitable relief as a remedy for any such breach.

20. 관세 및 수출 관리

20.1 신용장 및 상황 : 무역신용, 수출신용, 또는 관세와 세금 및 기타 요금의 환급권을 포함해서 본 계약상으로 구매된 물품으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된 양도가능 신용장이나 혜택은 구매자에게 속해있다.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서면 문서와 구매자 승인 방식의 전자 상거래 기록을 포함)를 제공하여 구매자가 이러한 혜택과 신용장 및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공급자는 이와 더불어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자가 고객과 관련된 의무, 원산지 표시, 또는 라벨 요건과 인증 혹은 현지의 내용물 보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가 적용되는 무역특혜체제에 적합한 물품에 관하여 특혜 관세 대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국의 관세 연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문서, 및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전자 상거래 기록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자나 구매자가 지명한 서비스 공급업체에 제품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수출 문서를 제공하고 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수출 관련 라이선스나 허가를 취득한다. 그러한 경우에 공급자는 구매자가 라이선스를 받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20. CUSTOMS AND EXPORT CONTROLS

20.1 Credits and Refunds. Transferable credits or benefits associated with or arising from goods purchased under this Contract, including trade credits, export credits or rights to the refund of duties, taxes or fees, belong to Buyer. Seller will, at its expense, provide all information necessary (including written documentation and electronic transaction records in Buyer-approved formats) to permit Buyer to receive these benefits, credits, or rights. Seller will furthermore, at its expense, provide Buyer with all information, documentation, and electronic transaction records relating to the goods necessary for Buyer to fulfill any customs-related obligations, origin marking or labeling requirements and certification or local content reporting requirements, to enable Buyer to claim preferential duty treatment for goods eligible under applicable trade preference regimes, and to make all arrangements that are necessary for the goods to be covered by any duty deferral or free trade zone program(s) of the country of import. Seller will, at its expense, provide Buyer or Buyer's nominated service provider with export documentation to enable the goods to be exported, and obtain all export licenses or authorizations necessary for the export of the goods unless otherwise indicated in this Contract, in which event Seller will provide all information as may be necessary to enable Buyer to obtain such licenses or authorization(s).

20.2 반테러 민관 협정 : 미국으로 수입될 본 계약이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 내에서, 판매자는 미 관세 및 국경 보호청이 구축한 반테러 민관 협정("C-TPAT")에서 제시하는 권고 및 요건을 준수한다. 요청을 받을 경우, 판매자는 C-TPAT의 발의에 따른 것임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20.2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To the extent any good covered by this Contract are to be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ller sha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recommendations or requirements of the 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s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initiative. Upon request, Seller shall certify in writing its compliance with the C-TPAT initiative.

21. 구매자의 회복권

공급자가 물품이나 서비스의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물품이나 서비스가 해당 보증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또는 공급자가 계약을 위반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 간접적인 손실, 비용 및 피해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급자나 공급자의 계열회사가 구매자나 구매자의 계열회사에 대해 지니고 있는 금전적인 의무와 관련하여, 구매자는 어느 때에나 가능한 경우 공급자나 공급자의 계열회사에 연체했거나 지불해야 하거나 지불할 수 있는 총액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회복,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다.

21. BUYER'S RECOVERY RIGHT

With respect to any monetary obligations of Seller or Seller's affiliates to Buyer or Buyer's affiliat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direct and indirect losses, costs and damages resulting from Seller's failure to timely delivery goods or services, the failure of any goods or service to conform to applicable warranties or other breach by Seller of this Contract, Buyer may at any time, as applicable, recover, recoup or setoff such amounts by deducting such amounts from any sums that are, or will become, owing, due or payable to Seller or Seller's affiliates by Buyer or Buyer's affiliates.

22. 광고의 금지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광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공급자의 제품, 광고물이나 판촉물에 구매자의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2. NO ADVERTISING

Seller will not, in any manner, advertise or publish that Seller has contracted to furnish Buyer the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is Contract or use any trademarks or trade names of Buyer in Seller's goods, advertising or promotional materials unless Buyer consents in writing.

23. 묵시적 포기의 불가

어느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더라도 향후 그러한 이행을 요구할 권리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 위반에 대한 면제 또는 지연이 해당 규정 또는 다른 규정의 계속되는 위반에 대한 면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규정 위반에 대한 단일 또는 부분적인 권리 행사로 인하여 다른 또는 추가적인 권리행사가 배제되지 아니한다. 공급자의 어떠한 거래 또는 이행방침도 본 계약서상의 공급자의 의무를 면제시키거나 제한하는 증거로서 사용될 수 없다

23. NO IMPLIED WAIVER

The failure of either party at any time to require performance by the other party of any provision of this Contract will not affect the right to require such performance at any later time, nor will the waiver by either party of a breach of any provision of this Contract constitute a waiver of any succeeding breach of the same or any other provision. No failure or delay in exercising any right or remedy will operate as a waiver thereof nor will any single or partial exercise thereof preclude other or further exercise thereof. No course of dealing or course of performance may be used to evidence a waiver or limitation of Seller's obligations under this Contract.

24. 양도 및 경영권의 변동

구매자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수권받은 직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또한, 공급자가 (가) 소유자산 중에 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의할 경우, (나) 공급자의 경영권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당량의 주식 기타 지분을 판매 또는 교환하거나 그 제의를 하거나 판매 또는 교환하게 되는 경우, 또는 (다) 공급자의 경영권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투표나 기타 계약 또는 트러스트를 체결하거나 실행하거나 요하게 될 경우에는,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한 여하한 책임이나 11 조에 의한 원자재, 작업 중 물품, 또는 완제품을 구입할 의무 없이, 판매자에게 최소한 60 일 이전에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4. ASSIGNMENT AND CHANGE IN CONTROL

Buyer may assign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is Contract without Seller's prior written consent. Seller may not assign or delegate its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is Contract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from an authorized employee of Buyer. In addition, Buyer may terminate this Contract upon giving at least 60 days notice to Seller, without any liability to Seller or obligation to purchase raw materials, work-in-process or finished goods under Section 11, if Seller (i) sells, or offers to sell, a material portion of its assets or (ii) sells or exchanges, or offers to sell or exchange, or causes to be sold or exchanged, a sufficient amount of its stock or other equity interests that effects a change in the control of Seller or (iii) executes, or otherwise becomes subject to, a voting or other agreement or trust that effects a change in the control of Seller.

25. 당사자간의 관계

공급자와 구매자는 독립적인 계약 당사자들이다. 본 계약상의 어떠한 조항에 의하여도 어느 한 당사자가 그 목적을 불문하고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법적 대표로 여기지지 아니하며, 어느 한 당사자에게 다른 당사자를 대표하여 또는 다른 당사자의 이름으로 의무를 지거나 창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5. RELATIONSHIP OF PARTIES

Seller and Buyer are independent contracting parties. Nothing in this Contract makes either party the agent or legal representative of the other for any purpose whatsoever, nor grants either party any authority to assume or create any obligation on behalf of or in the name of the other party.

26. 준거법 및 관할 법원

26.1 미국 계약 : (가) 본 계약이 미국이나 미국 영토 내의 구매자에 의해 체결되거나 (구매자의 주소에 나타난 바), (나) 본 계약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미국이나 미국 영토 내의 구매자에게 선적될 물품에 대한 것이거나 (구매자의 수하 또는 수신 주소에 선박에 나타난 바), (다) 공급자의 선적지가 미국이나 미국 영토 내인 경우 (공급자의 선적 주소에 나타난 바)에는, (1) 본 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및 다른 법의 적용을 요하는 섭외사법 조항을 제외하고는, 미국 연방법과 미시간 주의 법에 따라 해석하며, (2) 구매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또는 형평법에 따른 조치와 소송절차를 취하기 위한 재판적을 미시간 주에 있는 적절한 연방 법원, 또는 주 법원으로 정하고, 그러한 재판 관할권과 재판적에 대한 모든 반대 의사를 포기하기로 동의한다.

26.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26.1 U.S. Contracts. If either (i) this Contract is issued by Buyer from a loca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its

territories (as shown by the issuing address of Buyer), (ii) this Contract is issued, in whole or part, for goods to be shipped to a Buyer loca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its territories (as shown by the ship to or receiving address of Buyer) or (iii) Seller's applicable shipping location is with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its territories (as shown by the shipping address of Seller), then: (a) this Contract is to be construed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State of Michigan, excluding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any choice of law provisions that require application of any other law, and (b) each party hereby agrees that the forum and venue for any legal or equitable action or proceeding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will lie in the appropriate federal or state courts in the State of Michigan and specifically waives any and all objections to such jurisdiction and venue.

26.2 미국 외 계약 : 26.1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가) 본 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및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하는 섭외사법 조항을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물품을 받는 장소(구매자에 인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선박 또는 구매자의 수취장소에 의하여 확인되는 장소)가 위치하는 나라(경우에 따라서 주(州)나 도(道))의 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나) 구매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에 대해 취하는 법적인 또는 관습법에 따른 조치와 소송절차는 공급자가 속해있는 관할 지역의 법원이나,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구매자가 물품을 받는 장소의 관할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다. 단, 후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른 송달 절차를 포함하여 그러한 관할 및 재판적에 대하여 공급자는 동의다. 또한, (다) 공급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에 대해 취하는 법적인 또는 관습법에 따른 조치와 소송절차는 구매자가 물품을 받는 장소의 관할법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26.2 Non-U.S. Contracts. In all cases not covered by Section 26.1 above, (a) this Contract is to be construed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country (and state or province, if applicable) where Buyer's receiving location is located (as shown by the ship to or receiving address of Buyer), excluding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any choice of law provisions that require application of any other law; (b) any legal or equitable action or proceedings by Buyer against Seller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may be brought by Buyer in any court(s) having jurisdiction over Seller or, at Buyer's option, in any court(s) having jurisdiction over Buyer's receiving location, in which event Seller consents to such jurisdiction and venue, including service of proces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procedures; and (c) any legal or equitable actions or proceedings by Seller against Buyer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may be brought by Seller only in the court(s)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Buyer's receiving location.

27. 분리조항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 법규, 규정, 조례, 행정명령이나 기타 법적 원칙에 따라 무효 또는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되는 경우, 그러한 조항은 경우에 따라 법규, 규정, 조례, 행정명령 또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개정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이 경우에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계속 완전한 효력이 있고 유효하다.

27. SEVERABILITY

If any provision of this Contract is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ny statute, regulation, ordinance, executive order or other rule of

law, such provision will be deemed reformed or deleted, as the case may be, but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comply with such statute, regulation, ordinance, order or rule, and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is Contract wi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28. 감사 및 조사권

구매자는 (가) 본 계약상의 용의점과 기타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 공급자가 생산 구매 주문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비용으로 공급자의 경영 및 회계 정책, 지침, 실무와 절차를 포함한 모든 관련 장부, 기록,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임금지불 자료,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지원자료를 감사하고 검토할 권리를 지닌다. 공급자는 그러한 모든 문서를 본 계약에 따른 마지막 대금 지급 후 4년간 유지 및 보존한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합리적으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의 감사에 협력하고 이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28. RIGHT TO AUDIT AND INSPECT

Buyer, at its expense, has the right to audit and review all relevant books, records, income statements, balance sheets, cash flow statements, payroll data, receipts and other related supporting data, including Seller's administrative and accounting policies, guidelines, practices and procedures, in order to (i) substantiate any charges and other matters under this Contract and (ii) assess Seller's ongoing ability to perform its obligations under the Production Purchase Order. Seller will maintain and preserve all such documents for a period of four (4) years following final payment under this Contract. Seller will provide Buyer with reasonable access to its facilities and otherwise cooperate and facilitate any such audits by Buyer.

29. 완전 합의

본 계약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구매자의 별첨서류, 첨부, 부록, 또는 기타 항목과 함께, 본 계약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 이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및 합의에 우선한다. 본 계약은 구매자에 의하여 작성된 서면 계약 수정본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본 계약에 포함된 규정과 반대되더라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본 계약의 성립과 관련되거나 또는 구매자와 공급자간 기존계약의 위반이나 예상되는 위반과 관련된 (그러한 기존 계약이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또는 사안과 관련이 있든 없든 이를 불문함) 부정행위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상대로 갖게 되는 제반 권리와 청구권을 명백하게 보유하고, 본 계약은 그러한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구매자가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지급금은 구매자의 청구권,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9. ENTIRE AGREEMENT

This Contract, together with the attachments, exhibits, supplements or other terms of Buyer specifically referenced in this Contrac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Seller and Buyer with respect to the matters contained in this Contract and supersedes all prior oral or written representations and agreements. This Contract may only be modified by a written contract amendment issued by Buyer.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herein, Buyer explicitly reserves, and this Contract will not constitute a waiver or release of, any rights and claims against Seller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any fraud or duress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f this Contract or any breach or anticipatory breach of any previously existing contract between Buyer and Seller (whether or not such previously existing contract related to the same or similar goods or subject matter as

this Contract). All payments by Buyer to Seller under this Contract are without prejudice to Buyer's claims, rights, or remedies.

30. 번역

구매자는 정보 목적을 위하여서만 이 일반 거래 약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반 거래 약관 조항의 의미나 해석과 관련하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의 영어 원본이 적용된다.

30. TRANSLATIONS

Buyer may provide various translated versions of the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However, the original English language version of the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ill apply in the event of any disagreement over the meaning or construction of any provisions of the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